

강릉시 대체인력뱅크(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)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

강릉시 대체인력뱅크(지방한시임기제공무원)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시 바랍니다.

2024년 4월 15일

강릉시인사위원회위원장

1. 임용분야 및 인원

근무부서	임용분야 및 (예정)직급	인원	근무 시간	주요 업무 내용
시장이 정하는 부서	일반행정 (지방한시임기제8호)	20명	주35시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일반행정 업무각종 제증명 및 민원서류 발급기타 부서장이 정하는 일반행정 업무 등

< 대체인력뱅크 운영 안내 >

- ▶ 휴직·출산휴가 등이 예상되는 결원에 인력을 사전에 확보하여 구성된 인력풀을 뜻함
 - ▶ 인력풀에 선발된 사람은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 대체인력뱅크에서 대기(미근무)
 - ▶ 임용사유 발생 시 업무대행기간 동안 지방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(최대 1년 6개월)
 - ▶ 대체인력뱅크로 구성된 선발인원은 채용부서가 임용을 요청할 경우 지체없이 응해야 하며, 시에서 지정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하여야 함
- ※ 선발인원 중 개인별 임용 시기는 차이가 있으며, 임용사유 미발생 시 임용되지 않을 수 있음
※ 임용되기 전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원 관련 규정(보수·복무 등)의 적용을 받지 않음
※ 휴직자를 대직하는 한시임기제 공무원으로 휴직 등은 불가

2. 근거 법령

- 가. 『지방공무원법』 제25조의5(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)
- 나.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제3조의2(임기제공무원의 종류)
- 다. 『지방공무원 임용령』 제38조의16(휴직자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)
- 라. 『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』 (행정안전부 예규 제274호)
- 마. 『지방공무원 균형인사 운영지침』 (행정안전부 예규 제258호)

3. 응시자격

가. 공통요건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
-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1조(결격사유), 「지방공무원 임용령」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에 해당되지 않고, 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2조(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)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

< 지방공무원법 제31조(결격사유)>

1.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<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(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)>

임용시험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, 그 처분이 있는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.

1.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
2.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
3. 통신기기,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
4.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
5. 병역, 가점,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·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
- 5의2. 체력시험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
6.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

<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>

-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,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또는 영리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

나. 임용자격: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

임용분야(등급)	임 용 자 격(기준일: 면접시험 시행예정일)
일반행정 (한시임기제 8호)	1. 고등학교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.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. 9급 이상 또는 9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<div style="border: 1px dashed black; padding: 5px; margin-top: 10px;"> < 관련분야 실무경력 > ○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체(법인의 일반 행정사무관리 관련 근무경력 <우대요건> ○ 컴퓨터 활용능력 자격증 소지자, 지방자치단체 근무 경력자 </div>

※ 실무경력 인정범위

-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담당업무, 근무기간 및 직위(직급)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(발급확인자 서명 및 연락처 포함 기재,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-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주당 40시간 미근무)으로 근무한 경우,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 명시
-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

퇴직 후 10년이 경과 되지 않아야 함

다. 응시연령: 18세 이상

라. 지역·성별: 제한 없음 (단,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)

4. 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(형식요건 자격심사)

- 1)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합격 결정
- 2) 제출서류에 의하여 심사하며, 응시자격 요건을 갖추고 제출서류에 이상이 없는 자는 모두 합격 처리함

※ 단,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직무분야와 관련된 연구실적, 경력 및 업무실적, 직무관련 자격증, 기타 업무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고 최종시험 응시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(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)

- 1)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등을 검정하며, 전문지식, 응용능력, 발전가능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

2) 면접시험 평정요소

-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
-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
- ③ 의사 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
- ④ 예의·품행 및 성실성
- ⑤ 창의력·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

3)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

- ① 면접시험은 15점 만점으로 하되, 각 평정요소마다 각각 상(3점), 중(2점), 하(1점)으로 하여 평정하며, 각 면접위원이 채점한 평균 점수가 최고 점인 자를 합격자로 결정
- ② 단, 시험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“하”로 평정하였거나, 시험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를 “하”로 평정한 경우는 불합격 처리
- ③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, 합격자 발표일 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

- 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추가합격자 결정할 수 있음
- ④ 최고득점자의 점수가 동점일 경우 '상'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.
 '상' 의 개수도 같을 경우 '중' 의 개수가 많은 순위로 결정

5. 시험일정

시험공고	원서접수	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 공고	면접시험		최종합격자 발표
			일시	장소	
2024.4.15.(월) ~ 2024.4.24.(수)	2024.4.22.(월) ~ 2024.4.24.(수)	2024.4.29.(월)	2024.5.7.(화) ~2024.5.9.(목) (예정)	면접시험 공고 시 안내	2024.5.13.(월) (예정)

- ※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험일정, 장소 등이 변경될 경우 사전에 응시자에게 개별 통지
- ※ 합격자 발표는 강릉시청 홈페이지 '시험·채용공고' 란에 공고

6. 보수수준

- 「공무원 보수규정」 제30조의4에 따라 주 35시간 기준으로 지급
(단위: 천원)

임용예정 직급	예상 연봉액	비 고
한시임기제 8호	26,867천원	주35시간

- ※ 1) 연봉 외 수당 등의 급여는 「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지급
- 2)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(단,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3) 연봉액은 기본수당 포함 지급 예상액이며, 업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

7. 응시원서 접수

- 가. 접수기간: 2024.4.22.(월) ~ 2024.4.24.(수) (09:00~18:00, 중식시간 제외)
 - 나. 원서교부: 강릉시 홈페이지(www.gn.go.kr) 시정소식 > 취업정보 > 채용정보
게시판에서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 다운로드 받아 사용
 - 다. 응시원서 접수처: 강릉시청 10층 행정지원과(인사) ☎ 033-640-5045
 - 라. 접수방법: 접수기간 내 본인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
 - 인터넷, 택배, 타인 전달 불가
 -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까지 접수하며 강릉시 수입증지 대신
 - ① 「우체국의 통상환증서(해당 금액상당)」와
 - ② 응시표 수령을 위한 「반신용 봉투」를 반드시 함께 우송
- ※ 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'등기용 우표 부착'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8. 제출서류

① 응시원서 1부(별지 제1호 서식)

▶ 응시수수료: 5,000원(강릉시 수입증지)

- 강릉시청 1층 종합민원실에서 해당 수수료 납입 후 응시원서에 인증기로 날인 (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 사용불가)
- 『국민기초생활보장법』에 따른 수급자와 『한부모가정지원법』에 다른 보호 대상자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하므로, 위 해당자는 수입증지 대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또는 한부모가족증명서 등을 첨부

② 이력서 1부(별지 제2호 서식)

- ▶ 이력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, 직장 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

③ 자기소개서 1부(별지 제3호 서식)

④ 직무수행계획서 1부(별지 제4호 서식)

⑤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1부

⑥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 * 최근 6개월 이내 발행

- ▶ 근무기간, 직위, 직급, 담당업무를 정확히 기재(발급확인자의 서명 또는 날인 및 연락처 포함)하고, 해당기관의 관인이 반드시 날인되어야 함
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(주당 40시간 미근무)으로 근무한 경우,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 명시
- ▶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5항)

⑦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부

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 전체기간 발급

⑧ 자격요건 검증 및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동의서(별지 제5호 서식)

⑨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(별지 제6호 서식)

⑩ 서류전형 자격요건 본인 의견서(별지 제7호 서식)

⑪ 관련분야 자격증 사본 1부(해당자만 제출)

※ 모든 작성서류(응시원서, 자기소개서 등)는 단면으로 인쇄하고, 스테이플러 사용을 금지합니다.

* 양면인쇄 금지

※ 제출서류는 법에서 정한 유효기간이 있는 서류의 경우 해당기간에 한해 인정하며, 유효기간이 없거나 갱신이 불필요한 서류의 경우 발급일과 상관없이 제출 가능함

※ 상기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,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※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한글 번역본(공증필)을 반드시 첨부

9. 응시자 유의사항

- 가. 면접시험 응시자는 면접시험 당일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응시표,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등록 하여야 합니다.
- 나.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별도로 시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.
- 다. 접수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병역사항, 신원조회, 결격사유조회, 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 (단, 불가피하게 원본으로 제출받은 서류에 대해서는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탈락자가 원할 경우에는 반환함)
- 라. 외국어로 기재된 증명자료(학력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에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공증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응시서류상 기재착오, 누락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.
- 바. 최종합격 된 자의 임용포기, 합격취소, 임용결격 사유,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의 사유로 임용하지 못하고 결원이 발생한 경우 합격자 발표 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가로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
- 사. 서류전형에 합격자가 있더라도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.
- 아.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, (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)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며, 재공고 시 최초응시자는 응시서류를 추가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.
- 자. 기타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시험 문의

행정지원과(인사) 033-640-5045